

202.72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헌법 및 법률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영향을 받는 주정부 기관 및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재난 사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뉴욕주의 헌법과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8항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본인은 행정명령 202호에서 설정된 것과 같이 2020년 3월 7일 토요일에 발효된 주 재난 비상상황(State Disaster Emergency) 선포를 30일간 지속하는 바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 3일 목요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호부터 202.21호까지 및 202.27호, 202.28호, 202.29호, 202.30호, 202.31호, 202.38호, 202.39호, 202.40호, 202.41호, 202.42호, 202.43호, 202.48호, 202.49호, 202.50호, 202.51호, 202.52호, 202.55호, 202.55.1호, 202.56호, 202.60호, 202.61호, 202.62호, 202.63호, 행정명령 202.67호 및 202.68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법률 및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12월 3일 목요일까지 30일간 추가로 지속합니다.

- 연례 안전 검사 및 최소한 2년마다의 배기가스 검사를 요구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301항 부속조항 (a)는 더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으며, 2020년 12월 1일까지 해당 검사를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 비운전자 신분증의 유효 기간이나 만료 기한을 허용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Vehicle and Traffic Law) 제491항 부속조항 1은 더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오토바이, 스노우 모빌, 선박, 제한된 사용 차량 및 모든 육로 차량에 대하여 등록 또는 번호판의 유효 기간 또는 만료 기간을 허용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 제401항, 제410항, 제2222항, 제2251항, 제2251항. 제2282(4)항은 더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으나, 2020년 12월 1일까지 해당 등록을 연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 판매자가 발행한 임시 등록 서류의 만료를 제공하는 범위까지의 차량 및 교통법 제420-a조는 더이상 일시 중지 또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 행정명령 202.67호에 따라, 가정법원법, 민사 관행법 및 규칙, 청구재판소법, 보호자대리 법원절차 법, 군사 법원 법, 또는 모든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규정, 또는 이 일부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의 절차법에 규정된 모든 법적 조치, 통보, 행동, 또는 기타 절차 소송 절차의 개시, 제출, 또는 서비스에 대한 모든 특정 시간 제한을 중지한, 후속 행정명령으로 수정 및 연장된 바에 따른 행정명령 202.8호 내의 민사사건 일시 중지는 이전 행정명령으로 수정된 바와 같이 이로써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자로 더이상 효력이 없으며, 모든 형사소송법 일시 중지가 유효하고 모든 가정법원법의 일시 중지가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까지 유효하며, 이후 수감된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청소년 비행 및 위탁 지원과 관련 없는 절차 진행을 미루는 청소년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행정명령 202.61호가 수정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제579항의 부속조항 1이 추가 임상 실험실에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 결과를 3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한 범위까지, 이러한 수정은 해당 실험실이 부서에 24시간 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속 및 개정되고, 부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더 자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다음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12월 3일 목요일까지의 기간 일시 중지 또는 개정합니다.

- 부동산 행위와 절차 법(Real Property Actions and Proceedings Law)의 제732항 및 743항은 본 행정명령 발행 일자에 계류 중인 임대료 미납에 대한 모든 약식 퇴거 절차에 대한 답변까지의 시간이 60일이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수정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12월 3일 목요일까지 발행합니다.

- 보건부 의사 진료실 실험실 평가프로그램(Department of Health Physician Office Laboratory Evaluation Program)이 권한을 부여한 임상 실험실 및 허가받은 전문가가 코로나19 또는 독감 검사를 시행하고 코로나19 및 독감 검사의 결과를 3시간 내에 부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202.61호에 포함된 지침 및 시행 지침은 임상 실험실 및 허가받은 전문가가 부서에 결과를 24시간 내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도록 수정되며, 필요한 경우 부서는 더 자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